#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
# 상 품 요 약 서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Ⅰ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

## 1. 상품의 특이사항

**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**

A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100세연금형 보험종목에 따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**연금기준금액**(다만,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)에 **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**을 적용하여 계산한 **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**을 지급합니다. 다만,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연금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?**

A :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**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**으로서 **연금개시나이** 계약해당일의 **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**을 말합니다. 다만,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?**

A :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**최저사망지급금** 및 **연금기준금액**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"**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**"에 "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"의 매년 "**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**"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. 다만,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<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>**

| 구분 | 경과기간 |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|
|---|---|---|
| 100세연금형 | 20년 이내 | 7% |
| | 20년 초과 | 5% |

**<연단위 복리 이자율 예시>**

최저연금기준금액을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 '가'목에서 정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, 이자율은 피보험자 가입나이 40세를 기준으로 4.09%~4.83%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)수준에 해당하며,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| 보험종목 | 피보험자 가입나이 | 보험료 납입기간 | 연금 개시나이 | 연단위복리 이자율수준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세 연금형 | 40세 | 10년 | 60세 | 4.83% |
| | | 10년 | 65세 | 4.21% |
| | | 5년 | 65세 | 4.09% |

**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인가요?**

A : 「**기준 기본보험료**」는 계약자가 회사에 **각 시점별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**를 말하고, 「**기준 추가납입보험료**」는 계약자가 회사에 **각 시점별로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**를 말합니다. 다만,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「기준 기본보험료」 및 「기준 추가납입보험료」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은 무엇인가요?**

A : **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**은 연금기준금액에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. **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**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**기본지급률** 및 **장기유지가산율**에 따라 정해지며,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(%) = 기본지급률 x ( 1 + 장기유지가산율 )

[기본지급률]

| 구분 | 100세연금형 | |
|---|---|---|
| 연금개시나이 | 남자 | 여자 |
| 55세이상 60세미만 | 3.06% | 2.92% |
| 60세이상 65세미만 | 3.30% | 3.15% |
| 65세이상 70세미만 | 3.68% | 3.50% |
| 70세이상 75세미만 | 4.25% | 4.05% |
| 75세이상 | 5.25% | 5.03% |

[장기유지가산율]

|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| 장기유지가산율 |
|---|---|
| 20년이상 25년미만 | 5% |
| 25년이상 30년미만 | 15% |
| 30년이상 35년미만 | 20% |
| 35년이상 40년미만 | 30% |
| 40년이상 45년미만 | 35% |

| | |
|---|---|
| 45년이상 55년미만 | 50% |
| 55년이상 | 60% |

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최저사망지급금은 무엇인가요?

A : **최저사망지급금은** 보험기간동안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을 **최저보증해주는 금액**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

**[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15세 미만인 경우]**

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, 「이미 납입한 보험료」

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, 「이미 납입한 보험료」 - 기발생한 연금액의 합계

**[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]**

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, 「최저연금기준금액」

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, 「연금기준금액」 - 기발생한 연금액의 합계

Q :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월공제액은 무엇인가요?

A :

월공제액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며,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.

| 월공제액 |
|---|
| <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인 경우><br>해당월의 위험보험료(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)<br>+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<br>+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<br>+ 계약관리비용(납입후 유지관련비용, 납입 후에 한함)<br><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인 경우><br>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<br>+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<br>+ 계약관리비용(연금지급부분) |

다만,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(납입중 유지관련비용) 및 계약관리비용(기타비용)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지급금이 "0"이 되면, 이후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.

**Q :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무엇인가요?**

A :

- 보험계약일부터 **보험료 납입기간의 1/2이 지난 이후**(다만,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이 지난)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경우 **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**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경우, **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**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①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

  ② 납입일시중지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(다만,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이 기본보험료의 200% 미만인 경우

  예) 계약당시 40세, 20년 만기 10년납 계약으로 5년 납입 후 1년 동안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
  → 경과기간 5년~6년(1년) 동안 납입일시중지 후 보험료 납입을 다시 시작하여 경과기간 6년~11년(5년)동안 보험료 납입

- 납입일시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매월 **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** (=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+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(납입 후 유지관련비용) +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+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)을 **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**(다만,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계약관리비용(납입 중 유지관련비용, 기타비용)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.

- 연기된 기본보험료 **납입완료시점**에서 **연금개시나이**까지의 기간이 **최소거치기간 미만**인 경우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지난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**연금개시나이가 연기**된다. 다만,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.

**Q :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?**

A :

-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"연금개시나이 - 최소거치기간"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%로 하고,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(기본보험료×12)의 100%로 합니다. 단,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상기 추가납입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(국고채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) 축소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)
-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(다만, 보

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의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단,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(다만,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이 연간 기본보험료(기본보험료의 12배) 이상이어야 합니다.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서 "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"만큼 차감되므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,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연금액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## 2. 보험가입자격요건

① 보험종목의 명칭 및 보험종류

| 구 분 | 명칭 | 보험종목 |
|---|---|---|
| 주계약 |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 | 100세연금형 |

② 보험기간

| 보험종목 |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|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|
|---|---|---|
| 100세연금형 |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|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|

※ 연금개시나이 : 55세~80세

※ 「100세 최종연금 지급일」이라 함은 피보험자 99세 계약해당일을 말함

③ 보험료 납입주기,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

| 구 분 | | 보험종목 | 납입주기 | 납입기간 | 최소거치기간 | 피보험자 가입나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계약 | 신한ONE더라이프 연금보험(무배당) | 100세연금형 | 월납 | 5년, 7년, 10년, 12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납 | A | 0세 ~ min[(연금개시나이-년납-A)세, 60세] |

- 태아가입 불가
- 주계약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- "최소거치기간"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함
- A는 가입나이가 50세미만시 5년, 50세이상시 7년으로 함

④ 가입한도

| 구 분 | 납입주기 | 가입한도 | | | 가입기준 세부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 | 월납 | 5년납 | 30만원 이상 | | - 태아가입 불가<br>- 보험료 기준 |
| | | 7년납 이상 | 35세 이하 | 20만원 이상 | |
| | | | 35세 초과 | 30만원 이상 | |

- 당사 및 全보험권(생보+손보+공제) 기계약합산 담보별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가입이 차등 또는 제한될 수 있음

⑤ 건강진단 여부

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, 나이,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# Ⅱ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

## 1. 상품의 구성

| 주 계 약 |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 | |
|---|---|---|
| 특 약 | + 다자녀가정우대특약 | (제도성) |

## 2. 보험금 지급사유

**※ 보장관련 유의사항**

- 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-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·개정될 경우,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·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"재해분류표" 또는 "질병 및 재해 분류표" 참조)

**■ 주계약**

**가. 지급사유 및 지급액**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지급사유 및 지급금액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금개시 전 보험기간</td><td>고도재해 장해급여금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지 급 사 유</th><th>지 급 금 액</th></tr>
<tr><td>고도재해 장해급여금</td><td>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함)</td><td>1,000 만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주)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「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지급금 중 큰 금액」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.

② 「최저사망지급금」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.

③ 「계약자적립액」은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,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다만,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.0%,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.25%를 적용함.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지급사유 및 지급금액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 요</td><td>○ 계약체결시 선택 가능한 보험종목은 100세연금형이며, 다음과 같이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종목에 따라 해당 연금을 지급함</td></tr>
<tr><td>연금개시 후 보험기간</td><td>금리연동 연금액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지 급 사 유</th><th>지 급 금 액</th></tr>
<tr><td>금리연동연금액</td><td>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</td><td>연금기준금액<br>(다만,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)을 기준으로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주) 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「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지급금 중 큰 금액」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.

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「이미 납입한 보험료 + 1,000원」을 최저로 함

③ 「최저사망지급금」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.

④ 「계약자적립액」은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,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함. 다만,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.0%,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.25%를 적용함.

⑤ 「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」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 따라 연금기준금액(다만,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)에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함.

⑥ 「연금기준금액」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.

⑦ 「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」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하며,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.

⑧ 100세연금형의 경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금리연동연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금리연동연금액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함.

⑨ 금리연동연금액을 매월, 매3개월,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 드립니다.

## 3.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### ○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  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약관 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### ○ 사기에 의한 계약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,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·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"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"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(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)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계약의 무효

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(다만,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)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(다만, "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"을 차감한 금액)을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.

### ○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

1.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
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(이하 "계약 전 알릴 의무"라 하며, 상법상 "고지의무"와 같습니다) 합니다. 다만,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2.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
 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"계약 전 알릴 의무"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

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# Ⅲ 보험료 산출기초

## 1.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

Q :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, 이 할인율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
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보장부문에 적용한 **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**은 연복리 2.25%입니다.

## 2.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율

Q :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| 구 분 | 남 자 | | | 여 자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세 | 40세 | 60세 | 20세 | 40세 | 60세 |
| 무배당 예정 재해장해 80%이상 발생률 [보험개발원 생명장기 제2023-2072호(2023.12.06)] | 0.000016 | 0.000014 | 0.000074 | 0.000005 | 0.000003 | 0.000021 |

## 3.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

Q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?

A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

## 4. 적립이율

**적립이율이란**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, 이 **적립액을 적립하는 이율**을 의미합니다.

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은 **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*와 운용자산이익률****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을 기초로 **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「공시이율Ⅷ(연금/교육)」**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. 2026년 07월 현재 **적립이율**은 연복리 2.45%이며,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이율도 변동됩니다.

*** 객관적인**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, 회사채,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
****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**

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최저보증이율

**최저보증이율은**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**10년이내 연복리 1.0%, 10년초과 연복리 0.25%입니다.**

# Ⅳ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,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**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(무배당)**은 **무배당상품**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# V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## 1.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

**Q :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?**

A : 우리 신한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## 2. 해약환급금 예시

- 100세연금형

■ **월납** <기준 :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, 40세가입, 60세 연금개시, 10년납>

- 최저보증이율 적용시
(계약일부터 10년이내 연복리 1.0%, 10년초과 연복리 0.25%)

[단위 : 원]

| 경과기간 | 납입보험료(A) | 남자 | | | | 여자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해약환급금(B) | 환급률(B/A) | 계약자적립액(C) | 적립율(C/A) | 해약환급금(B) | 환급률(B/A) | 계약자적립액(C) | 적립율(C/A) |
| 3개월 | 900,000 | 56,609 | 6.2% | 614,930 | 68.3% | 56,639 | 6.2% | 614,960 | 68.3% |
| 6개월 | 1,800,000 | 585,488 | 32.5% | 1,123,131 | 62.3% | 585,548 | 32.5% | 1,123,191 | 62.3% |
| 9개월 | 2,700,000 | 1,112,837 | 41.2% | 1,629,802 | 60.3% | 1,112,927 | 41.2% | 1,629,891 | 60.3% |
| 1년 | 3,600,000 | 1,638,659 | 45.5% | 2,134,945 | 59.3% | 1,638,779 | 45.5% | 2,135,065 | 59.3% |
| 2년 | 7,200,000 | 3,726,774 | 51.7% | 4,140,346 | 57.5% | 3,727,012 | 51.7% | 4,140,583 | 57.5% |
| 3년 | 10,800,000 | 5,790,830 | 53.6% | 6,121,687 | 56.6% | 5,791,184 | 53.6% | 6,122,041 | 56.6% |
| 4년 | 14,400,000 | 7,831,115 | 54.3% | 8,079,258 | 56.1% | 7,831,584 | 54.3% | 8,079,727 | 56.1% |
| 5년 | 18,000,000 | 9,847,914 | 54.7% | 10,013,343 | 55.6% | 9,848,497 | 54.7% | 10,013,926 | 55.6% |
| 6년 | 21,600,000 | 11,841,509 | 54.8% | 11,924,224 | 55.2% | 11,842,205 | 54.8% | 11,924,919 | 55.2% |
| 7년 | 25,200,000 | 13,812,179 | 54.8% | 13,812,179 | 54.8% | 13,812,986 | 54.8% | 13,812,986 | 54.8% |
| 8년 | 28,800,000 | 15,677,485 | 54.4% | 15,677,485 | 54.4% | 15,678,401 | 54.4% | 15,678,401 | 54.4% |
| 9년 | 32,400,000 | 17,520,411 | 54.0% | 17,520,411 | 54.0% | 17,521,436 | 54.0% | 17,521,436 | 54.0% |
| 10년 | 36,000,000 | 19,341,228 | 53.7% | 19,341,228 | 53.7% | 19,342,360 | 53.7% | 19,342,360 | 53.7% |
| 15년 | 36,000,000 | 15,156,187 | 42.1% | 15,156,187 | 42.1% | 15,158,759 | 42.1% | 15,158,759 | 42.1% |
| 20년 | 36,000,000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

- 공시이율 연 2.45% 적용시 : 평균공시이율(연 2.5%)과 2026년 07월 공시이율(연 2.45%) 중 낮은 이율 적용
- 공시이율 연 2.45% 적용시 : 2026년 07월 공시이율(연 2.45%)

[단위 : 원]

| 경과 기간 | 납입보험료 (A) | 남자 | | | | 여자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해약환급금 (B) | 환급률 (B/A) | 계약자적립액 (C) | 적립율 (C/A) | 해약환급금 (B) | 환급률 (B/A) | 계약자적립액 (C) | 적립율 (C/A) |
| 3개월 | 900,000 | 58,196 | 6.4% | 616,517 | 68.5% | 58,226 | 6.4% | 616,547 | 68.5% |
| 6개월 | 1,800,000 | 590,478 | 32.8% | 1,128,121 | 62.6% | 590,539 | 32.8% | 1,128,181 | 62.6% |
| 9개월 | 2,700,000 | 1,123,040 | 41.5% | 1,640,005 | 60.7% | 1,123,131 | 41.5% | 1,640,095 | 60.7% |
| 1년 | 3,600,000 | 1,655,882 | 45.9% | 2,152,168 | 59.7% | 1,656,002 | 46.0% | 2,152,288 | 59.7% |
| 2년 | 7,200,000 | 3,790,048 | 52.6% | 4,203,619 | 58.3% | 3,790,288 | 52.6% | 4,203,860 | 58.3% |
| 3년 | 10,800,000 | 5,928,699 | 54.8% | 6,259,557 | 57.9% | 5,929,061 | 54.8% | 6,259,918 | 57.9% |
| 4년 | 14,400,000 | 8,071,847 | 56.0% | 8,319,990 | 57.7% | 8,072,330 | 56.0% | 8,320,473 | 57.7% |
| 5년 | 18,000,000 | 10,219,501 | 56.7% | 10,384,930 | 57.6% | 10,220,106 | 56.7% | 10,385,534 | 57.6% |
| 6년 | 21,600,000 | 12,371,671 | 57.2% | 12,454,385 | 57.6% | 12,372,397 | 57.2% | 12,455,111 | 57.6% |
| 7년 | 25,200,000 | 14,528,366 | 57.6% | 14,528,366 | 57.6% | 14,529,214 | 57.6% | 14,529,214 | 57.6% |
| 8년 | 28,800,000 | 16,606,883 | 57.6% | 16,606,883 | 57.6% | 16,607,853 | 57.6% | 16,607,853 | 57.6% |
| 9년 | 32,400,000 | 18,689,945 | 57.6% | 18,689,945 | 57.6% | 18,691,038 | 57.6% | 18,691,038 | 57.6% |
| 10년 | 36,000,000 | 20,777,562 | 57.7% | 20,777,562 | 57.7% | 20,778,778 | 57.7% | 20,778,778 | 57.7% |
| 15년 | 36,000,000 | 18,566,121 | 51.5% | 18,566,121 | 51.5% | 18,568,987 | 51.5% | 18,568,987 | 51.5% |
| 20년 | 36,000,000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 36,001,000 | 100.0% |

※ 상기 예시금액은 발행일 현재 최저보증이율, [평균공시이율(연 2.5%)과 2026년 07월 공시이율(연 2.45%) 중 낮은 이율], 2026년 07월 공시이율(연 2.45%)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,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 따라서, 이 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예시된 해약환급금도 변동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. (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,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복리 1.0%, 10년초과 연복리 0.25%입니다.)

※ 상기 환급률은 각각의 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.

※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※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입니다.

※ 공시이율이란 매월 1일 회사가 운용자산 이익률, 실세금리 및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.

※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체결비용(해약공제액 포함)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상기해약환급금은 「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」의 「이미 납입한 보험료 + 1,000원」 최저보증을 반영한 금액입니다.

## VI 모집 수수료율

**모집수수료란?**

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(보험설계사)에게 보험판매,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

(채널 : TFC, 남자, 40세가입, 100세연금형, 60세 연금개시, 전기납, 월납보험료 30만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이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모집<br>수수료율 | 월납 | 1.40%주1) | 0.58%주1) | 0.09%주1) | 0.17%주1) | 2.25%주2) |

※ 주1) 1년~4년이후까지의 "연도별 모집수수료율"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"연도별 모집수수료"의 비율입니다.

※ 주2) "모집수수료율 합계"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"전체 모집수수료"의 비율입니다.

※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,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Ⅶ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

# 수수료 안내표

### 1) 기본 비용 및 수수료

(기준 : 남자 40세, 60세 연금개시, 10년납, 기본보험료 30만원)

| 보험종목 | 1~10년 | 10년 초과 |
|---|---|---|
| 100세연금형 | 8.313% | 2.00% |

※ 상기 금액은 납입기간 중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위험보험료 평균의 합산 금액입니다.
(납입기간 후 기본비용 및 수수료는 하단 참조)

### - 100세연금형

| 구 분 | 목 적 | 시기 | 비 용 |
|---|---|---|---|
| 보험관계비용 | 계약체결비용 | 매월 | 10년 이내 : 기본보험료의 4.18% (12,540원) |
| | 계약관리비용 | 매월 | 보험료 납입시 : 기본보험료의 4.133% (12,400원)<br>납입기간 이후 : 기본보험료의 2.00% (6,000원) |
| | 위험보험료 | 매월 | 기본보험료의 0.004~0.021% (12 ~ 32원) |
| 보증비용 |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| 매월 | [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미만인 경우]<br>-연금개시전보험기간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25%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3%)<br>-연금개시후보험기간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16666667% 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2%)<br>[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이상인 경우]<br>-연금개시전보험기간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58333333% 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7%)<br>- 연금개시후보험기간 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25%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3%) |
| |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 | 매월 | - 연금개시전보험기간<br>보험료 납입중 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125%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1.5%) + 매월 보험료 합계액의 0.291666667% (매년 보험료 합계액의 3.5%)<br>보험료 납입후 :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70833333%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85%)+ 매월 보험료 합계액의 0.125% (매년 보험료 합계액의 1.5%)<br>- 연금개시후보험기간<br>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.029166667%(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.35%) |
|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|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| 연금 수령시 | 연금연액의 0.7% |
| 해약공제 | 해지에 따른 페널티 | 해지시 | 아래 도표 참조※ |

주) 1. 위험보험료 :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.

※ 해약공제 비용

| 경과시점 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6년 | 7년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해약공제금액(만원) | 50 | 42 | 34 | 25 | 17 | 9 | 0 |
| 해약공제비율(%) | 13.8% | 5.8% | 3.1% | 1.8% | 1.0% | 0.4% | 0.0% |

2) 추가 비용 및 수수료

| 구 분 | 목 적 | 시 기 | 비 용 |
|---|---|---|---|
| 추가납입보험료 | 계약관리비용 | 납입시 |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합계액 이내 :<br>Min(추가납입보험료의 0.5%, 50,000원)<br>계약자적립액의 인출 합계액 초과 :<br>추가납입보험료의 1.5% |
|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수수료 |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비용 |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 | 수수료 면제 |